

우편번호 : 01018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기 관 명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전화번호 : 02-901-7123

「사이버통일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능개선 용역 공고(긴급)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하거나, 입찰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구매입찰공고서 및 제안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 서류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 「사이버통일교육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능개선

- 수요기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사업금액 : 금33,000,000원(금삼천삼백만원)
- 추정가격 : 30,000,000원(* 부가세 별도)
- 품명/수량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식
- 납품기한 : 2026.11.30.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입찰(계약)방법 : 총액/일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공동수급 : 가능(공동이행방식)
- 하도급 : 불허
- 하자담보기간 : 검수일로부터 1년
- 공고기간 : 2026.9.15.(화) ~ 2026.9.28.(월)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9.18.(금) 10:00
 -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자 : 2026.9.29.(화) 10:00
- 입찰(개찰)일시 : 2026.9.29.(화) 11:00
- 가격 개찰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나라장터)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제안서 참고)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코드 : 1468)**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 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정부조달콜센터☎(대표) 1588-0800, (일반) 042-61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같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가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 가.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나.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라.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입찰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및 관련되는 면허를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합니다.(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가.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G2B)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④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나.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다.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 (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8. 제안서 및 서류제출(온라인 제출)

가.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중빙포함)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중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평가 관련 서류는 아래 제출 서식 및 제안서 붙임(제안서를 반드시 참고)

1)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각 1식(증빙자료 포함)

2) 발표자료 1식

- 발표자료 및 발표자 재직증명서(제출일 기준 발표가능자 등록)

3)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및 제안서 기타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3)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및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각 1부.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5)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 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9. 기타 유의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

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 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건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건표 작성 및 제출)

- 다.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바.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

- 가. 평가기관 : **수요기관(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 담당자(02-901-70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제안서 참고)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차등점수제 적용 : 순위간 점수차 2점

다.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나’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 합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 인지세 및 계약보증금

본 입찰공고 의한 낙찰자(계약자)는 「인지세 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시행규칙 제51조~제55조에 의거하여 인지세 및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로 갈음합니다.

17. 기타사항

- 가.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 사실과 상위 없음 ”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통일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 계약 체결 시 적격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차.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제안요청서 등에 따릅니다.
- ※ 본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스마트교육팀 사업담당자 (☎ 02-901-7021)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6. 9. 14.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청렴계약이행 및 보안 서약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에서 발주한 모든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및 수행에 있어 당 사(본인)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계약업무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부터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있을 경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계약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어떠한 정보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겼을 경우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의 어떠한 조치(형사 고발, 손해 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음을 서약한다.

위 청렴계약이행 및 보안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 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주) 대표 (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 귀하

양식 1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통일부(소속기관)와 체결한 _____ 계약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나는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나는 작업 시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항상 지급한다.
4. 나는 현장 안전관련 주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5. 나는 경미한 부상이나 사고 발생 시에도 관리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6. 나는 서약한 안전관련 모든 사항을 작업자에게 안내하고 교육한다.
7. 나는 불임 안전·보건 특수조건을 성실이 따른다.

2026년 월 일

☐ 업체명 :

☐ 계약상대자(사업주) : (서명)

☐ 사업(현장) 안전책임자 : (서명)

* 계약 체결시 사업(현장)책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착수제 제출 또는 작업투입 전까지
반드시 사업(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

통일부(소속기관) 귀중

[안전·보건관리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통일부 및 소속기관과 체결하는 모든 도급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안전준수 의무를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②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중대재해처벌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제3조(안전준수 의무)

-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예방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작업환경 점검 및 위험성평가)

-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작업환경 점검 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②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

-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통일부에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통일부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통일부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통일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조치)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통일부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